

충청북도세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
번호 83

제출년월일 : 1999년 2월 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개정이유

- '98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'99. 1. 1부터 시행중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세조례의 일부내용을 법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기 위함

주요골자

○ 별장 등 사치성재산의 중과세율 조정

별장·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을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고 있던 것을

⇒ 100분의 500으로 함 (안 제23조 제2항)

○ 1가구당 1대초과 차량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규정 삭제

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·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 중과하는 것을 삭제함

○ 자동차의 저당권설정등록시 등록세율 조정

자동차를 저당권 설정등록시 등록세율을 채권금액의 1,000분의 10 내지 1,000분의 30으로 각각 차등 적용하던 것을

⇒ 1,000분의 2의 세율로 단일화함 (안 제31조 제1항·제2항)

조 례(안) : 별 첨

근거법령 : 지방세법 제3조

기타 참고자료 : 별 첨

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제2항중 “100분의 750” 을 “100분의 500” 으로 하고,
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31조 제1항 제2호중 “1,000분의 30” 을 “1,000분의 2” 로 하고,
동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2. 저당권 설정등록

채권금액의 1,000분의 2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례) 제23조제2항·제3항, 제31조제1항제2호·제2항제2호 및
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